

##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의 제명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를 “고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하고, “토지평가위원회”를 “부동산평가위원회”라 한다.

제2조제1항중 “15인”을 “10인 이상 15인”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동산가격에 정통한 자와 감정평가 관련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사항
5. 표준지 조사평가에 따른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6.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중 “연임할 수 있다” 를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

임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제10조중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명: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p> <p>제1조(목적) 본 조례는 <u>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의 규정</u>에 의한 <u>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u>15인</u>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생략)</p> <p>③위원중 재무과장, 종합민원실장, 지역경제과장, 도시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p> <p>1. <u>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u></p> <p>2.~3. (생략)</p> <p>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u>군수의 자문에 응한다.</u></p> <p>1. <u>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u></p> <p>2. <u>공시지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u></p> <p>3. <u>기타 군수가 부의 하는 사항</u></p>	<p>제명:고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p> <p>제1조(목적) --- 「<u>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u>」 제20조----- -----<u>부동산평가위원회</u>----- -----</p> <p>제2조(구성) ①----- -----<u>10인</u>이상 <u>15인</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p>1.<u>부동산가격에 정통한자와 감정평가 관련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u></p> <p>2.~3. (현행과 같음)</p> <p>제4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p> <p>1. <u>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u></p> <p>2. <u>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u></p> <p>3. <u>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u></p> <p>4. <u>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u></p> <p>5. <u>표준지 조사평가에 따른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u></p> <p>6. <u>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에 관한 사항</u></p> <p>7. <u>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u></p>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 되 필요시 <u>연임할 수 있다.</u></p> <p>제10조(실비보상)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 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u>고성군위원회실비 변상조례</u>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5조(임기) ----- --- <u>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u></p> <p>제10조(실비보상)----- -----<u>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u>----- -----.</p>